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7일 강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,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용어 및 일부 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.

- 조례명을 “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”로 개정

나.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도록 변경.

- “위원장은 위원들을 소집하고”를 “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”로 수정함 (안 제7조)

다.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“정책연구과제”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조문을 변경.

- “정책연구과제”를 “정책연구용역“으로 정비하고, ”정책연구과제 신청서 “를 “정책연구용역 제안서”로 정비함 (안 제6조, 제9조, 제10조)

라.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보완.

- 안 제8조 삭제
- 안 제14조 보완

마.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.

- 위원회에서 지정하던 정책연구용역평가 전문위원을 용역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제안 시 지정토록 함(안 제10조, 제13조)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개요

개정조례안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용어 및 일부절차를 정비하며, 일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○ 조례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.

- 조례명을 “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”로 개정

○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“정책연구과제”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조문을 변경.

- “정책연구과제”를 “정책연구용역“으로 정비하고, ”정책연구과제 신청서 “를 “정책연구용역 제안서”로 정비함 (안 제6조, 제9조, 제10조)

○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보완.

- 안 제8조 삭제
- 안 제14조 보완

○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.

- 위원회에서 지정하던 정책연구용역평가 전문위원을 용역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제안 시 지정토록 함(안 제10조, 제13조)

다. 종합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용어 및 일부절차를 정비하며, 일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붙임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